



# “여론몰이”로 공무원을 벼랑 끝으로

## 정부의 속내

- ▶ 현재 : 지방선거 후 연금논의 본격화,  
끊임없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
- ▶ 내년 : 재정 재 계산후 법 개정, 대대적인 개혁 작업 추진

##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나.  
(정부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금지! 겸직금지!  
과실로 인한 2중 처벌! (형사벌, 행정벌)

##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 버린 정부

- ▶ 매일 평균 3~4건 중앙방송과 중앙지에 도배
- ▶ 공무원이 국민세금 강탈(혈세로 보전)
- ▶ 공무원과 군인은 낸 돈의 3배 이상 가져간다.
- ▶ 공적연금을 하루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연금때문에 부담할 미래의 부채가 1천117조원의 절반 596조원 발생(2013국회계결산서)

- ▶ 596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공무원과 정부의 납부액은 빼고, 모든 공무원이 일시에 그만두고 기준수급자와 20년간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언론에 훌려 선동)
- ▶ 정부의 부당사용금 6조 9천억(현재 가치 20조)은 왜 안 갚고 있나. (갚을 여력도 없겠지만.)
- ▶ 공무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연금감소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 가입하면 연금 이중가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예상)

# 공무원 연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 | 1960년 최초의 공적연금 -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

- ▶ 1949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연금제도의 근거 신설
- ▶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정 궁핍 상황 속에서 제도 창설 지연
- ▶ 1960년 최초의 공적 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의 근본개념이다.

###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

- ▶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정병전담의사, 사법연수원생 등)
- ▶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일부 직원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위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
  - 기타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 제외대상 : 군인, 선거직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구분	종류	사유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일시금등	퇴직, (일반)사망시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일시금등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이상 재직후 퇴직, 사망시
재해보상급여	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공무상부상, 질병, 장애, 사망시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우금	재해발생시

## 2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구분	공무원연금 ('10.1.1 개정)	국민연금 ('07.7.3 개정)
제도 일반	① 도입시기	1960년 1월 1일
	② 제도성격	노령연금+퇴직금+인사정책
부당	③ 부당률(보험료)	공무원: 7%, 국가: 7% 개인: 4.5%, 사용자: 4.5%
	부당금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급여	급여종류	퇴직연금등 19종
	④ 퇴직연금 산정기준 : 소득재분배기능	(A+B)/2 A: 전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 B: 개인의 전기간 평균소득
	⑤ 지급률	2.1%→1.9% 1.5%→1.25%('08) →1%('28)
	연금지급시연령	60세 (법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는 65세)
	급여제한	있음(형벌등 최대 1/2 삭감)
	수급요건	2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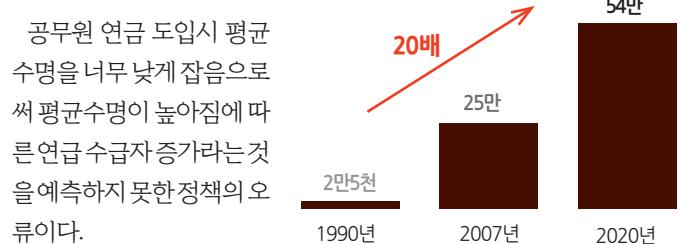
좌측 하단의 표만 보더라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으며 연금제도의 성격상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인사정책 부분 즉 급여제한과 같은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 국민연금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 개인 부담금이 2.5% 높은 것과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공무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특수성은 완전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이유는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즉 노동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민간보다 낮은 보수, 품위유지 의무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위반시 징계 등 공직박탈, 연금도 1/2까지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공무원 연금을 결정하였음에도 언론이나 납세자연맹 단체 등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적자 보전으로 공무원 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식의 보도로 공무원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조차 없는 환경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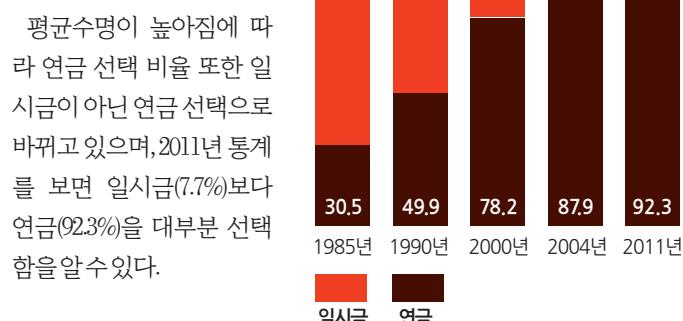
평생 연금 하나만을 바라보고 낮은 보수를 받고 북북히 공직생활을 임한 분들의 한탄섞인 어조가 여기저기 들리는 이유다.

## 3 |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 원인에 대하여…

### 1.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 2. 연금 선택 비율 상승



### 3. 외국 정부 대비 낮은 정부 부담률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률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정부의 부담률보다 낮다.

구분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공무원부담률	7%	7.3%	6.1%	(없음)	6.1%
정부부담률	11%	23.8%	23.6%	52.5%	53%
GDP대비 정부부담률	0.5%	1%	2.1%	1.9%	3.4%

▶ 정부부담률이 4% 높은 이유 - 퇴직수당+적자분 포함

## 4. 정부의 연금 기금 부당사용 및 수급자 양산

정부의 재원으로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부담금을 미납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가 양산된 것 또한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건명	부당 사용 및 정부 부담금 미납
'98 IMF 당시 구조조정 (11만여 명 감원)	퇴직일시금 4조 7,169억 원 지급
2005년 철도청 공사화 (3만 9천 명 퇴직)	퇴직일시금 2,277억 원 지급
'83~'00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 (정부부담금)	5,863억 원
퇴직수당 ('92~'95 정부부담금)	6,144억 원
부당 사용 및 정부부담금 총액	6조 1,453억 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 수급자 양산

연금 수급자 총수	자연퇴직자	구조조정 퇴직자
34만 5천 명	19만 6천 명 (57%)	14만 9천 명 (43%)

## 4 | 공무원 연금 어떻게 개정되었나?

### 1. 연금 산정기준 변경

연금 산정기준이 종전에 보수월액(기본급과 정근수당 포함)에서 기준소득월액(총소득)으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하여 과세소득의 65% 수준이 과세소득 100%로 높아졌음을 위 표에 보듯 알 수 있다.

개인별 편차가 큰 6개 보수는(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반영한다.

### 2. 연금 지급액(지급률) 인하

종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무 기간 동안의 보수가 산정됨으로 연금 지급액이 인하된다.

연금 산정에 있어서도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였다.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 이후 재직 기간(2010년 1월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09년 12월 이전)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

원연금공단에 "내연금보기"를 통하여 퇴직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부조급여 등은 종전 급여 수준이 유지되며, 다만 급여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비율만 조정된다.

## 3.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기여금 및 정부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종전**  
보수월액의 8.5%  
(기준소득월액 기준 5.25%)

**개정**  
기준소득월액 7.0%  
6.3% (10년)  
→ 6.7% (11년)  
→ 7% (12년)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아래 기여금 인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다.

기여금 인상 예시: 8급 10호봉 기준(단위: 원)

보수 월액	과세 소득액	부당예상 기여금				
		5.52% (현재)	6.0% (09년)	6.34% (10년)	6.67% (11년)	7.0% (12년)
1,618,050	2,489,300	137,530	149,360	157,820	166,040	174,250
예상 기여금	증가액 (08년대비)		+11,830	+20,290	+28,510	+36,720
부당	증가율		8.6%	14.8%	20.7%	26.7%

(주) 보수인상 및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 비교함

## 4. 연금 산정시 소득상한제 설정

매년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액의 1.8배를 기준으로

**종전**  
신설

**개정**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8배를 소득 상한으로 설정

연금 및 기여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 5.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

기준 재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 만, 법 시행일 이후 (2010.1.1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되어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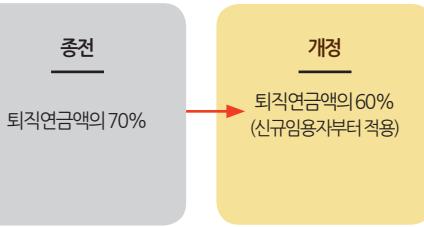
**종전**  
60세부터 자금 원칙 기준 재직자는 종전 규정 적용

**개정**  
65세부터 자금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지급이 개시된다. 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라고 하더라도 개정이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준 재직자로 간주하여 60세부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기존 재직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종전의 규정인 퇴직연금액의 70%를 지급받으나, 법 시행일 이후(2010.1.1이후) 신



규임용자부터는 퇴직연금액의 60%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조정되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임용자중 개정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자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액의 70%를 적용받는다.

## 7. 기타 개정된 사항

<b>소득 심사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li> <li>-연금감액비율 상향조정 및 기준수급자에게도 적용 (10%-50%→30%-70%)</li> </ul> <p>&lt;해설&gt;</p> <p>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p> <p>-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최고 1/2까지 연금에서 감액(1/2초과할 수 없음)</p>		
	<b>초과소득</b>	<b>지급정지액(현행)</b>	<b>지급정지액(수정안)</b>
	50만원 이하	초과소득액 × 10%	초과소득액 × 30%
	50만원 초과~100만원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액×20%)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액×40%)
	100만원 초과~150만원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액×30%)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액×50%)
	150만원 초과~200만원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액×40%)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액×60%)
<b>형별시 연금감액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li> <li>-개정: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 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li> </ul>		
<b>재직기간 합산허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li> <li>-개정: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퇴직자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 추가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li> </ul>		

<b>연금액 조정기준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물가인상률+정책조정</li> <li>- (개정):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이행기간 기간단축(10년→5년)</li> </ul>
<b>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 보상금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li> <li>- (개정): 화재진압 출동·구조중 사망시에도 인정</li> </ul> <p>* 순직유족보상금: 1억3천만원→1억5천만원</p>

**정부는 이제 1.4시대 행정은 그만하고  
3.0시대에 맞게 즉각 대화하라!  
꼼수 부리지 마라!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우리**에게 퇴직금이 있습니까? 월급을 많이 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지난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무원 급여 수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이없음에 현실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 공무원 급여수준이 민간의 93%였음을 누가 아는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진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97%까지 현실화 되었으나, 그것도 잠시….(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민간의 100%수준을 지킴) 결국, 전 정권 말기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임금 대비 84%수준까지 곤두박질 시켰던(교원 제외 시 76%)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돈 구할데가 없으니, 언론과 시민단체를 앞세워 공무원 연금을 깎아 선심성 복지제도를 유지하려 하는가?

방만한 국가경영의 피해를 결국 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00만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들의 생존권은 지켜질 것이다!**

**10만원 투쟁기금 한번으로 백만원(매월)되는 연금박탈 막아내자!**

## “연금개악 저지투쟁”

**우리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자를 위해 대동단결 하며, 100억원 투쟁기금을 조성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연금투쟁기금모금방법 : 원천징수동의서 서명후 급여 일괄공제(연말정산시 : 지정기부금 적용)**

※ 2008년도 대정부연금 투쟁시 기금 136억을 성공적으로 모금하고 강력히 투쟁하여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었음.

(중앙지 1종 단 1회 전면광고 비용 : 약 1억원 소요됨)

※ 연금개악 대국민 언론홍보 및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할 기금 모금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모금액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 투쟁본부 기금으로 편성되어, 연금개악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위하여 연맹 연금투쟁위원회 주관 아래 빈틈없이 투명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 053-603-3920 Fax. 053-603-3929